

#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▪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2. 5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이지형 자원순환과장)

### 가. 폐지사유

○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, 과태료 부과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조례가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○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환경부 「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」이 폐지(2008.05.13.)됨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소멸되어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함께 폐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○ 「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 폐지조정하고자 함(안 제17조제1항제4호나목)

## 다. 관련법령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폐지조례안은 「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」이 폐지(2008.05.13.)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,

#### ○ 종합검토 결과

- 기후에너지환경부 「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」은 2008년 5월 13자로 폐지되었으며, 현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‘과태료의 부과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17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‘법률유보의 원칙’에 어긋나므로 「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며,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